
[요약]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

2023. 4.

관계부처 합동

I. 추진 배경

-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근절 필요
-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, 방식도 치밀하고 교묘해지면서 전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

< 추진 경과 >

-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(부총리, 3월)
 - 현장 전문가(3.6), 정신건강 전문가(3.14), 인성교육 전문가(3.16)
-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(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, 3.9)
- 부처 의견수렴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개최(차관, 3.21)
-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수렴(3.23, 4.4)
- 세미나(이대 학폭예방연구소, 3.10), 학교폭력·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(부총리, 3.24)

II. 현황 및 평가

□ 현황

- (피해응답률) '12년 「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」 이후, '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생의 응답률'은 감소하다가 '17년부터 다시 증가
 - '20년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, 점차 대면교육이 확대되면서 '22년은 감염병 발생 전인 '19년보다 높아진 상황

<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 >



- (유형) 신체폭력은 '13년 학교폭력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('13년 66.9% → '21년 35.9%)
 - 반면, 사이버폭력은 2배 이상('13년 5.4% → '21년 11.8%), 언어폭력은 4배 이상('13년 5.5% → '21년 25.9%) 증가

- (발생건수) 학교폭력은 '13년 1.8만 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'17년부터 3만 건, '19년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
 -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상정 없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자체 해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('20년은 코로나19로 감소)

<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 >



- (심판·소송) 심의위의 조치 결정에 대한 가해학생의 행정심판, 행정 소송 제기비율은 5% 미만 수준('21년, 심판 4.8%, 소송 1.3%)이나,
 - 최근 3년간 행정심판·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
 - ※ △ 행정심판 건수 : ('20) 480건 → ('21) 751건 → ('22) 889건
 - △ 행정소송 건수 : ('20) 111건 → ('21) 211건 → ('22) 265건
 - 특히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·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*은 50% 이상으로 높고 본안심판·소송의 최종 인용률**을 훨씬 상회
 - * (최근 3년 평균) 심판 53.9%, 소송 63%
 - ** (최근 3년 평균) 심판 14.6%, 소송 9.8%

□ 그간의 정책 평가

< 제도 개요 >

- 발생 :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·피해학생을 즉시분리(3일)하고 긴급조치*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**에서 사안을 조사
 - * 서면사과, 접촉·협박·보복행위 금지, 학교봉사,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, 출석정지
 - ** 교감, 책임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학부모(1/3이상) 등으로 구성
- 해결 :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교육지원청)는 폭력의 성격, 가해 학생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* 결정
 - *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·협박·보복 금지), 3호(학교봉사),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·심리치료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, 9호(퇴학)
- 다만, 피해학생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('19.9월 도입)

- (무관용 원칙 완화) '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·보존하여 '사소한 괴롭힘'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,
 - '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*으로 현재 최대 2년까지 보존, 중간삭제 도입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약화
 - * 보존기간 : ('12) 초·중 5년, 고 10년 보존 → ('13) 5년 보존 → ('14) 2년 보존, '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' 도입 → ('23) 2년 보존(전학은 중간삭제 없이 보존)
- (피해학생 보호 한계) 가·피해학생 즉시분리(3일 이내) 제도 및 학교장 긴급조치*를 통해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,
 - * (피해학생) 심리상담 및 조언, 일시보호, 그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(가해학생) 서면사과, 접촉·보복행위 금지, 학교봉사,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, 출석정지
 - 사안 발생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(3주),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(4주) 소요기간에 비해 분리 기간이 짧아 피해학생 보호의 공백 발생

<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현행 분리제도 >



- 행정심판·소송·집행정지 등 가해학생 불복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집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2차 피해에 노출

< 가해자 조치 불복시 흐름도 >



- (현장 대응력 약화) 학생 인권과 학습권은 강화*된 반면, 교권이 약화** 되고 생활지도 권한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 및 소극 대응
 - * (인권조례) 서울·경기 등 7개 교육청, (민주시민교육 조례) 15개 교육청(대구, 대전 폐지)
 - ** '교권침해 심각' 54.7%, '학생인권 강조가 원인' 43%(KEDI, '22년 교육여론조사)

Ⅲ. 추진과제

< 기본방향 >

- ◆ 일방·지속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
- ◆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
- ◆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

1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: '학교폭력시 불이익' 인식 확립

□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·관리 강화

- **신규**(기록강화) 출석정지·학급교체·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(최대 2년→4년)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실효성 있게 제재
 - 졸업 직전의 기록 삭제 여부 심의 시, △ 피해학생 동의, △ 가해학생 반성정도(관계회복 전문가 판단)를 반영하여 엄격히 심의하도록 개선

<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 >

	현행	개선
1·2·3호	• 졸업과 동시에 삭제	
4·5호	• 원칙 : 졸업 후 2년 보존 • 예외 :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	
6·7호	• 원칙 : 졸업 후 2년 보존 • 예외 :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	• 원칙 : 졸업 후 4년 보존 • 예외 :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
8호	•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	•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
9호	• 영구보존(삭제 불가)	

※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·협박·보복금지), 3호(학교봉사),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, 9호(퇴학)

- **신규**(기재 일원화) 학생부 3개 항목에 조치별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'학교폭력 조치 상황란' 신설, 일원화하여 관리

- **강화**(심의 前 자퇴 불가)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회피를 목적으로 심의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시행령 개정

□ 학교폭력 2차 가해 차단

- **신규**(가중조치) 사안 발생 즉시,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학생, 신고자에 대한 '접촉·협박·보복행위 금지(2호)' 조치를 의무화하고
 - 위반시 6호 이상 처분(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)을 가중
 - ※ 접촉·협박·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「학교폭력예방법」 개정
- **신규**(신속조치) 심의회의 조치사항 결정시 가해자의 심판·소송 등 불복시에도 조치사항 신속이행 원칙이 준수되도록 매뉴얼 개정

□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·정시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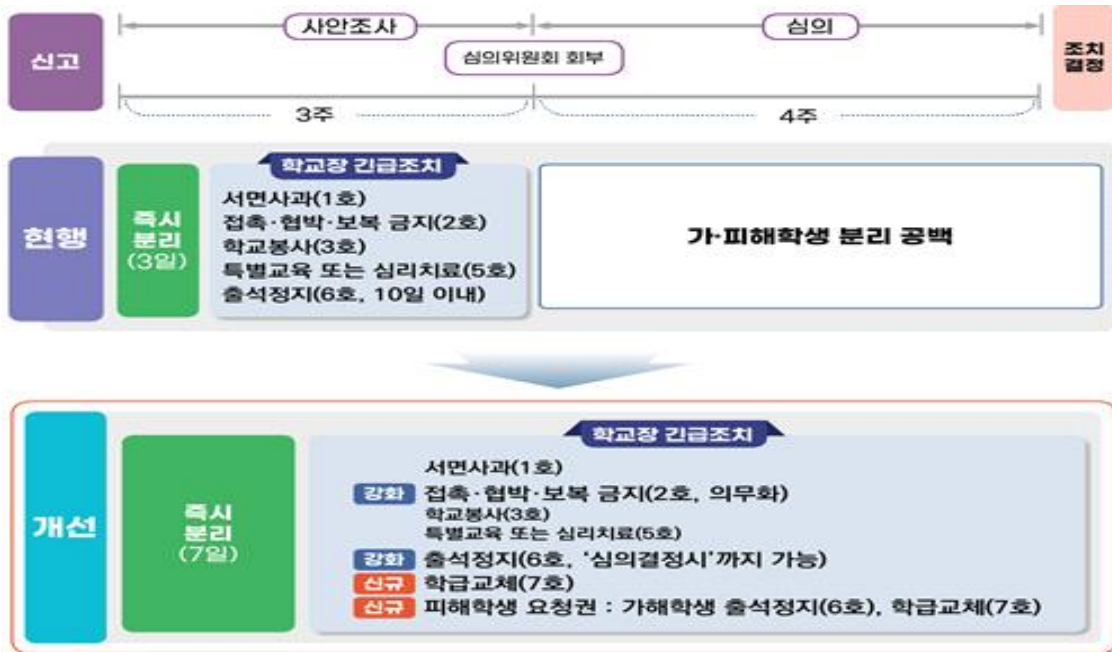
- **신규**(반영 확대) 학생부교과·종합 등 학생부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, 논술, 실기/실적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
- **신규**(자퇴생 대입) 자퇴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신설되는 학생부 내 '학교폭력 조치 상황란'에 기록하도록 하여 대입 반영 지원

2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

□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

- **강화**(분리기간 연장) 사안 발생 즉시, 학교장의 가·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현행 '3일 이내'에서 '7일 이내'로 연장
- **신규**(긴급조치 강화)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*에 학급교체(7호) 추가, 출석정지 기간도 '심의결정시'까지 가능하도록 긴급조치 강화
 - *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·협박·보복 금지), 3호(학교봉사), 5호(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), 6호(출석정지)
- **신규**(분리요청권)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(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)을 부여하도록 「학교폭력예방법」 및 시행령 개정

<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 >



□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

- **신규** (진술권 보장) 가해학생 조치 불복시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측에게 '불복사실'과 '심판·소송참가'가 가능함을 통지하여 진술권 보장
- **신규** (분리요청권) 집행정지로 학교폭력 조치 보류시,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(출석정지, 학급교체)을 행사하도록 「학교폭력예방법」 개정

□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지원

- **신규** (전담지원관) 사안 초기(1단계)는 '학교폭력 책임교사', 이후(2단계)는 교육청의 '피해회복·관계개선 지원단'에서 전담지원관을 지정하여,
 -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(심리상담, 일시보호, 요양치료, 법률자문 등)를 파악, 법률·의료서비스 및 전문지원기관 매칭 지원

<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운영체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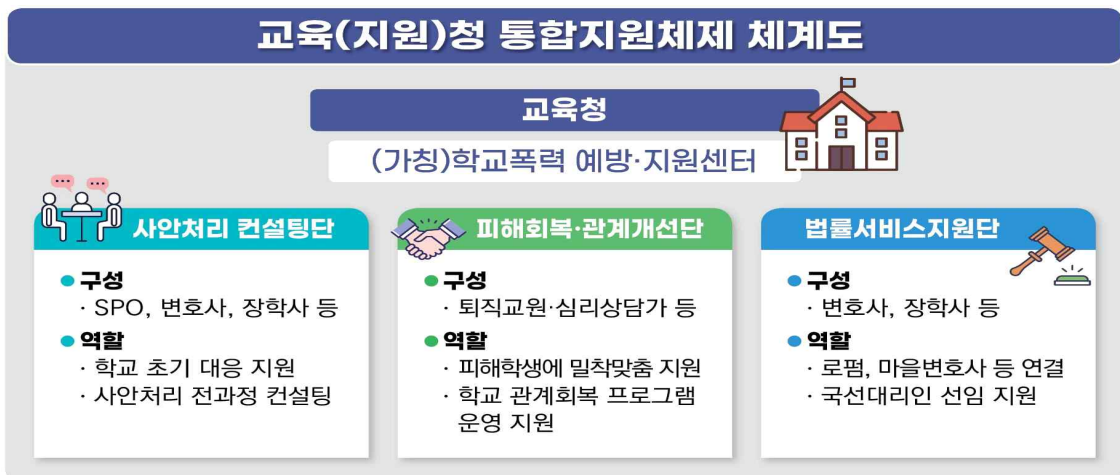


- **강화**(맞춤기관)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('23년 303곳 → '24년 400곳)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
- **신규**(법률지원) 교육청에서 지역 로펌 연계, 전문변호사 지원, 법률구조서비스 매칭·제공을 통해 피해학생의 법적 대응 지원
 -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지원,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행정심판 참가시 국선대리인 선임(행정심판법 개정)
- **강화**(심리·의료 지원) 병·의원 협약·위탁,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확대, 고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전문 심리·의료 지원
- **신규**(사후 지원) 치유·회복, 학업 상황 점검 등 후속 지원, 보복·재피해 우려시 학교전담경찰관(SPO)을 통한 맞춤형 순찰 지원

3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

□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

- **신규**(현장 지원) 시도교육청별 '(가칭)학교폭력예방·지원센터'를 설치하여 사안처리, 피해회복·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
 - * 교육청에 학교전담경찰관(SPO) 등으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지원



- **강화**(여건 조성) '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' 운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을 통한 업무환경 조성

□ 학교의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

- **강화** (조기감지체계) 학교-경찰 간 학교폭력 정보 공유체계 구축(학교폭력예방법 개정), SNS 등을 활용한 사이버폭력 감지 앱 활용도 제고
- **강화** (신속대응) 학교장·책임교사의 긴급한 요청시 교육(지원)청별 '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'을 가동하여 학교폭력 신속 대응·해결

□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

- **신규** (교권 강화)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
- **신규** (교원 지원) 수석교사의 교육활동을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가·피해 학생 관계회복 지원까지 확장하여 교원의 관계회복 지도역량 제고 지원
- **강화** (교권 보호)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·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
 -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자문 제공 및 배상책임보험 보장

□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

- **신규** (권한 부여) 경미한 사안임에도 피해학생 측의 심의 요청시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 -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가해학생에게 별도 선도·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수화
- **강화** (학교 지원)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상담·복지 전문가, 화해·분쟁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회복·관계개선 지원단 구성·운영
- **신규** (학교폭력 책임계약) 학생·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인식하는 '학교 : 학생·학부모' 간 책임계약을 맺고 실천
 - 학교폭력 대응 선도학교 운영('23년 200교 → '25년 전국), 교원단체와 캠페인·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확산

4 학교의 근본적 변화 견인 ·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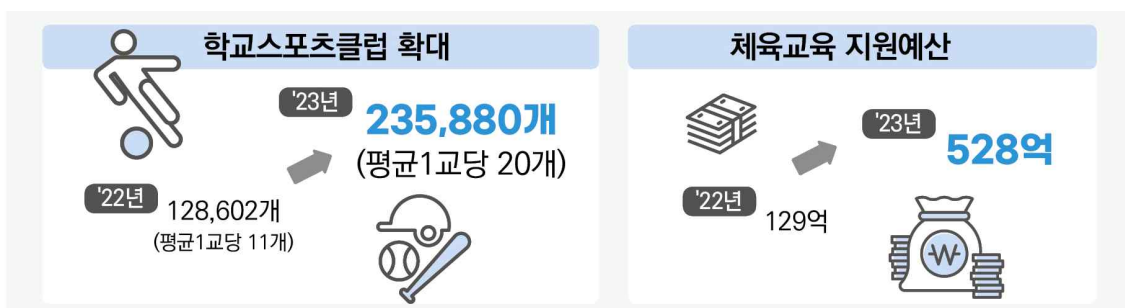
□ 학교 구성원의 사회 · 정서 교육 지원 강화

- **신규** (사회·정서 안정지원) ADHD, 디지털 과몰입, 분노, 스트레스 등 정서·행동발달 특성을 조기에 진단·지원하는 '학생 사회·정서 지원체계' 구축
 - 교육부의 학생 심리·정서 교육 전담 기능 강화, (가칭)「학생 사회·정서 지원법」 제정, 학생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*
- * ('23.하) 시범학교,희망 늘봄학교에 도입운영(200교) → ('24) 시범교육청 운영 → ('25) 전국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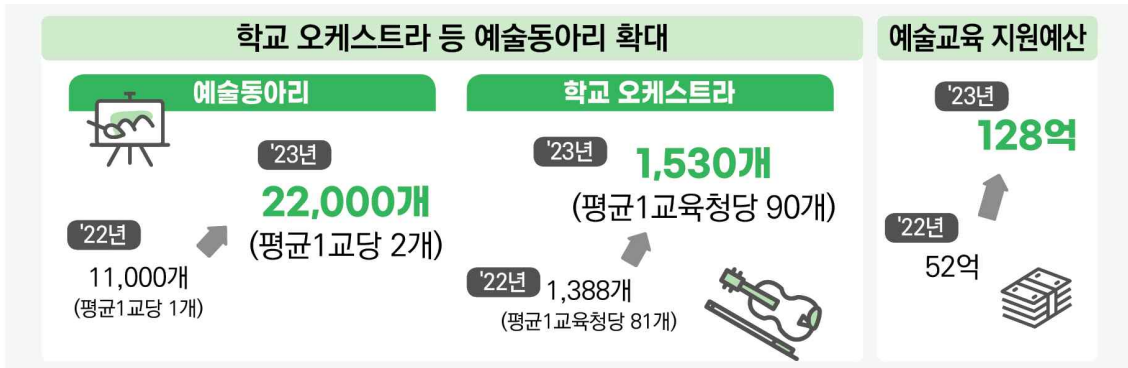


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· 체육 · 예술교육 활성화

- ※ (인성교육) 국가교육위(4월, 전인교육특위 구성) 중심으로 인성교육 협력 추진
- **신규** (인성교육) 교과교육 활동, 늘봄학교, 방과후학교 등 교육현장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· 운영 지원
- **강화** (체육교육) 방과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, 학교스포츠클럽 대회, 학생들의 신체활동 동아리(체육 운동아리, '23~) 운영 확대



- **강화** (예술교육) 협력적 소통·배려 등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오케스트라·뮤지컬·K-POP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연차적 확대



□ 언어·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

- **강화** (언어폭력)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(9월4주~10월2주) 이용한 바른 언어 사용 릴레이 캠페인 추진, '언어습관 자가진단 앱(App)' 활용도 제고
- **강화** (사이버폭력)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전 사회가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 확대
 - 학생 친화적 교육매체(메타버스, 유튜브, 랩송 등)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

□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

- **강화** (참여기회 확대) 민간,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(지원)청 단위 학부모 연수 확대
 - ※ 다양한 형태(on/off-line용, 민간-지역사회 연계) 활용 및 학교폭력 책임계약에 예방교육 의무 명시(학기당 1회 이상) 등 내실화 지원
- **강화** (돌봄휴가 활용) 학부모 교육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*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 - *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근거한 가족의 질병, 사고,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통상 10일 인정

학교폭력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



가해학생 조치	전학(8호) 조치 학생부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	출석정지(6호) 학급교체(7호) 조치 학생부 기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칙: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• 예외: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 	접촉·협박 등 금지(2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반시 조치 병과 또는 가중 	대입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칙: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• 예외: 졸업 직전 심의*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 * 심의요건 강화: 피해학생 동의서, 가·피해자간 행정 심판·소송 진행 상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촉·협박·보복 행위에 비대면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•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조치 의무화 • 위반시 6호 이상 조치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생부, 수능, 논술, 실기/실적 위주 전형에 조치사항 반영 • 자퇴한 가해학생의 '조치사항'도 학생부에 표기하여 대입 반영 지원 	
	피해학생 보호	즉시 분리 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일 	학교장 긴급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·2·3·5호 • 6호(출석정지, 10일 이내) 	가해학생 조치 불복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해학생 불복사실을 알 수 없어 진술권 보장에 한계 	피해학생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해학생 서비스 지원 미흡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7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·2·3·5호 • 6호(출석정지, '심의결정시'까지) • 7호(학급교체) ※ 피해학생에게도 6·7호 요청권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불복사실 통지하여 진술권 보장 • 심사·소송 참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, 의료 서비스 등을 매칭·안내
현장 대응력 제고		사안처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계적 지원체계 미흡 	학교의 권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학교폭력예방법」, 등 법령, 매뉴얼에 근거 	학교폭력 대응 여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폭력 전담 업무 과중에 따른 기피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폭력 예방·지원센터 설치 등 통한 현장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학교폭력예방법」, 등 법령, 매뉴얼에 근거 • '학교폭력 책임계약'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'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' 운영 •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 	
	다제적 편입	심리·정서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 개별적으로 운영, 체계적 지원 체계 미비 	인성·체육·예술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스포츠클럽 평균 1교당 11개 • 예술동아리 평균 1교당 1개 	예방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과 연계, 체험 중심 예방교육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립법 제정, 전담부서 신설 등 학생 사회·정서 지원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스포츠클럽 평균 1교당 20개 • 예술동아리 평균 1교당 2개 • 국가교육위(인성교육특위) 협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과 연계, 체험 중심 예방교육 • 디지털 기술 및 학생 친화적 매체 활용 	